

이사회규정

전문개정 2000. 11. 20
개정 2001. 05. 16
개정 2002. 11. 13
개정 2003. 05. 22
개정 2004. 01. 02
개정 2004. 10. 13
개정 2005. 03. 09
개정 2005. 07. 20
개정 2006. 11. 15
개정 2007. 04. 19
개정 2007. 07. 18
개정 2008. 03. 05
개정 2008. 09. 05
개정 2008. 11. 26
개정 2009. 03. 12
개정 2010. 03. 10
개정 2010. 10. 11
개정 2011. 12. 30
개정 2012. 12. 14
개정 2013. 12. 30
개정 2014. 02. 12
개정 2014. 04. 24
개정 2014. 07. 25
개정 2014. 09. 30
개정 2015. 01. 30
개정 2015. 04. 24
개정 2015. 06. 26
개정 2015. 07. 24
개정 2016. 08. 30
개정 2016. 12. 30
개정 2017. 07. 06
개정 2018. 04. 16

개정 2018. 05. 03
개정 2018. 09. 05
개정 2019. 01. 23
개정 2019. 06. 26
개정 2020. 08. 28
개정 2020. 11. 27
타법개정 2021. 06.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30, 2018.9.5, 2020.11.27>

제2조(적용범위)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8.30>

② 이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18.9.5>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4조(의장)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 부원장, 혁신경영본부장, 공시통계본부장, 시장관리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5.16, 2002.11.13, 2005.3.9, 2007.7.18, 2009.3.12, 2011.12.30, 2012.12.14, 2014.4.24, 2015.6.26, 2016.8.30, 2017.7.6, 2018.5.3, 2018.9.5, 2021.6.28>

제5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개정 2007.4.19, 2018.9.5>

③ 정기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짝수월 마지막 금요일 전후 2주내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을 경우 이사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9.5, 2014.4.24, 2016.8.30, 2018.4.16>

④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8.9.5, 2016.8.30>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5.22, 2007.4.19, 2016.8.30>

제6조(의결방법<개정 2018.9.5>)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4.19, 2018.9.5>

② 삭제<2007.4.19>

③ 이사회 의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7.4.19, 2016.8.30, 2018.9.5>

제7조(의결사항<개정 2018.9.5>)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4.1.2, 2004.10.13, 2005.7.20, 2006.11.15, 2007.4.19, 2007.7.18, 2008.3.5, 2010.10.11, 2014.4.24, 2014.9.30, 2015.1.30, 2015.4.24, 2016.8.30, 2016.12.30, 2018.9.5, 2019.6.26, 2020.8.28, 2020.11.27>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식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신주인수권의 부여

다. 주식의 분할

라.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원장경영계약안 작성

다. 삭제<2009.3.12>

라.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마. 비상임이사의 조사분석비, 출석수당 등 실비의 결정

바. 부동산원과 이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사.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삭제<2020.8.28>

4의2. 본 규정 및 다음 각 목의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 나. 「상임임원 복무규정」
- 다. 「상임이사 및 감사 보수규정」
- 라. 「본부장보수규정」
- 마.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 바. 「안전사고에 관한 상임임원 문책규정」
- 사. 「직제규정」
- 아. 「회계규정」
- 자. 「내부회계관리규정」
- 차. 「직원 복무규정」
- 카. 「인사규정」

5.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삭제<2018.9.5>

7. 예산의 결정·변경

가.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

나.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예산의 변경

다. 예비비의 사용. 다만 이사회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위임한 것은 제외한다.

8. 결산

9.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항

11.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12.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13. 재산과 권리의 득실에 관한 사항(50억원 초과)

14.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15. 자회사의 설립, 매각, 청산 등

16.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상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17. 관계법령, 정관 또는 부동산원 내규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8. 기타 원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

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7.4.19, 2014.2.12>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8.30, 2018.9.5>

④ 제1항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사항 및 제9조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 이외의 사항은 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8.9.5>

제8조(보고사항)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1>

1. 국정감사, 회계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체결시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4. 기타 원장이 특별히 보고하는 사항

② 감사는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30>

[본조신설 2007.4.19]

제9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특정사항을 심의하거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8.30, 2018.9.5>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8.3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9.5>

④ 위원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원장 또는 소속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8.30>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6.8.30, 2018.9.5>

⑥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

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9.5>

⑦ 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의견청취 및 의사록에 관하여는 각각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8.30, 2018.9.5>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이사회내에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개정 2004.1.2, 2004.10.13, 2005.7.20, 2008.11.26, 2013.12.30, 2014.4.24, 2014.7.25, 2016.8.30, 2016.12.30, 2018.9.5, 2020.8.28, 2020.11.27>

1.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가. 제7조제1항제4호의2에서 정한 규정 외의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

- (1) 기본경영방침과 계획
- (2) 지사의 이전
- (3) 부 단위 조직의 변경
- (4) 조직별 정원의 변경
- (5) 이사회 의결로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비비의 사용

다.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 (1) 인사와 급여체계의 변경
- (2) 실처지사장의 임면·이동
- (3) 삭제<2014.7.25>

라. 중요한 계약과 협약에 관한 사항

- (1) 위탁 또는 수탁업무계약의 체결
- (2) 노동협약의 기본적 사항

마. 재산과 권리의 득실에 관한 사항(50억원 이하)

바. 부동산원 내규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사.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과 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없을 경우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4.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준용한다.

② 이사회내에 경영혁신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개정 2002.11.13,

2004.10.13, 2007.7.18, 2008.11.26, 2015.7.24, 2016.8.30, 2018.9.5, 2019.1.23>

1.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비상임이사 2인 이상으로 한다.
2. 경영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가. 기획조정, 경영지원, 홍보, 정보전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나. 원장과 감사의 직무청렴계약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정기 경영혁신위원회는 반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경영혁신위원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내에 사업발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신설 2015.7.24, 2016.8.30, 2018.5.3, 2018.9.5, 2019.1.23>

1.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비상임이사 2인 이상으로 한다.
2. 사업발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가. 가격공시, 부동산통계, 시장관리, 평가관리, 보상사업, 도시재생, 녹색건축, 연구개발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나. 신규사업 추진 관련 중요한 사항
 - 다.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정기 사업발전위원회는 반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사업발전위원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삭제<2016.8.30>

제11조(비상임이사) ①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및 그 밖에 부동산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개정 2016.8.30, 2020.11.27>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시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부동산원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8.30, 2020.11.27>

③ 비상임이사는 원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19]

제12조(의견청취) ① 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2016.8.30>

제13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본사에 비치한다.<개정 2014.4.24, 2016.8.30>

제14조(간사) ①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사회를 주관하는 실처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
3. 그 밖에 이사회 의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3]

부칙<2000.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최초 사외이사 선임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2001년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2인을 경영발전및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중 “임원”을 “상임이사”로 한다.

② 종합근무평정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임원”을 “상임이사”로 한다.

③ 여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 제7조의2, 제11조, 제20조제1항 별표제5호 중 “임원”을 “상임이사”로 한다.

④ 업무용차량관리요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14조제1호 중 “임원”을 “상임이사”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개정규정 중 감사에 관한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1.5.16>

이 규정은 200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13>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5.22>

이 규정은 200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

이 규정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다른 내규중 “사외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한다.

부칙<2005.3.9>

이 규정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7.20>

이 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15>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19>

이 규정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다른 내규 중 “경영발전및보상위원회”를 “경영발전위원회”로 한다.

부칙<2008.3.5>

이 규정은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5>

이 규정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6>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2>

이 규정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0>

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1>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4>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30>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다른 내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2014.4.24>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25>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30>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30>

이 규정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24>

이 규정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6>

이 규정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다른 내규 중 “경영발전위원회”를 “경영혁신위원회와 사업발전위원회”로 한다.

부칙<2016.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감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다른 내규 중, “상임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를 “감사”로, “상무이사”를 “상임이사”로, “영업년도”를 “사업연도”로, “당원”, “우리원”, “회사” 등

한국감정원의 약칭을 “감정원”으로 각각 한다.

부칙<2016.12.30>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6>

이 규정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6>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3>

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9.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다른 내규 중 “이사회 결의”를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②다른 내규 중 “운영위원회 결의”를 “운영위원회 의결”로 한다.

부칙<2019.1.23>

이 규정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26>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8>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7조제1항 본문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회사”를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3호 및 제15조제5항제2호·제3호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③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회사”를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4조제1호나목·다목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회사”를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④ 내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감정원 정관」”을 “「한국부동산원 정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⑤ 위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호·제7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8조제1항·제3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⑥ 주식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 출자회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5호·제7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가목, 제6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7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⑧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호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제63조제1항, 제94조, 제95조, 제110조의2 본문,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117조제4항, 제119조제1항제3호,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4조제4항, 제12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1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31조의3제1항, 제1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9조제1항제6호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⑨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5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⑩ 경영계획및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3조제11호·제12호, 제7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7조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⑪ 사내벤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호·제2호, 제5조제3호·제4호, 제8조제1호·제2호·제3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호,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한국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⑫ 정보공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⑬ 인권경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⑭ 문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6조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6호, 제16조제1항 단서, 제23조, 제26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32조제8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⑮ 기록물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호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⑯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2조, 제14조의4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의3제1항제1호, 제42조, 제49조제4호 및 제57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한국감정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⑰ 개방형임용직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⑱ 비정규직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5호·제7호, 제21조의2제1항 단서, 제23조제1호부터 3호까지 및 제7호,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2조, 제45조제1항제3호·제4호, 제45조의2 단서 및 제57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⑲ 전문직및업무지원직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⑳ 상임임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3항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감정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임직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㉑ 직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본문·단서,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41조제3항제1호·제2호, 제57조제1항 및 제75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㉒ 안전사고에관한상임임원문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㉓ 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5호·제7호·제7호의2, 제8조제1항제1호, 제14조, 제16조제5호,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 본문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한국감정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행동

강령」”으로 한다.

㉔ 구상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㉕ 종합근무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㉖ 고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㉗ 연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제2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18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7조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한국감정원 정관」”을 “「한국부동산원 정관」”으로 한다.

㉘ 국외근무직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4호, 제10조제2항제2호·제4호·제9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및 제31조 중 “우리 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㉙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및 감정원”을 “및 부동산원”으로 한다.

㉚ 임금피크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㉛ 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호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㉜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

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㉓ 복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항 본문·단서,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0조제4항 단서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㉔ 보안업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㉕ 지가변동률조사·산정담당자선정·의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㉖ 담보평가서검토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중 “「한국감정원법」”을 각각 “「한국부동산원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5조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㉗ 보상평가서검토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㉘ 택지비평가서검토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㉙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㉚ 감정평가타당성조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한다.

㉛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4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㉜ 도시재생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㉝ 부동산연구원기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부칙<2021.6.28>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